

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정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0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9.

발의자 : 정동영 · 황정아 · 이정현  
윤준병 · 윤종군 · 김우영  
박홍배 · 황명선 · 노종면  
민형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 · 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. 소송수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29건은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임. 법원은 29건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.

이같은 보도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. 이에 방

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“공정성”을 삭제하고자 함(안 제32조 및 제33조).

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 제목 중 “공정성 및 공공성”을 “공공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전단 중 “공정성과 공공성”을 “공공성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공정성 및 공공성”을 “공공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“공정성 · 공공성”을 “공공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6호 중 “공정성 · 공익성”을 “공익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報道 · 論評의 <u>공정성</u> · <u>공공</u> <u>성</u> 에 관한 사항	10. ----- <u>공공성</u> ----- ---
11. ~ 15. (생 략)	11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방송광고 내용의 <u>공정성</u> · <u>공익성</u> 에 관한 사항	16. ----- <u>공익성</u> --- -----
17. (생 략)	1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